

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2-24

대 구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3고단4647 가.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
나.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마약)

피 고 인 1.가. A
2.가.나. B

검 사 구재연(기소), 남현규(공판)

변 호 인 변호사 정호원(피고인 A를 위한 국선)
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박상흠(피고인 B을 위하여)

판 결 선 고 2024. 11. 20.

주 문

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
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.

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.

피고인 A로부터 10만 원, 피고인 B으로부터 45만 원을 각 추징한다.

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

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.

1. 피고인 A

가. 대마 수수

피고인은 2017. 5.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'D' 내에서, 성명불상자(일명 'E')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.

나. 대마 흡연

피고인은 2022. 11. 중순경 경북 칠곡군 F G호 내에서, 대마 불상량을 담배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.

다. 대마 교부

피고인은 2023. 3. 11. 20:30경 경북 칠곡군 F G호 내에서, H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.

2. 피고인 B

가. 대마 수수

1) 피고인은 2023. 3. 11. 20:30경 경북 칠곡군 F G호 내에서, H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.

2) 피고인은 2023. 3. 19. 22:00경 서울 광진구 I J호 내에서, H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.

나. 대마 흡연

1) 피고인은 2022. 2. 10. 23:0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불상지에서, 대마 불상량을 켜진 종이에 넣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,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.



2) 피고인은 2022. 8. 9. 20:05경부터 같은 날 22: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K L 호 내에서, 대마 불상량을 켜린 종이에 넣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,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.

3) 피고인은 2023. 3. 11. 20:30경 경북 칠곡군 F G호 내에서, 대마 불상량을 켜린 종이에 넣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,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.

다. 펜타닐 투약

피고인은 2023. 3. 17.경 서울 광진구 I J호 내에서,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디트랜스 패치를 조각내어 알루미늄 호일에 붙인 뒤,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성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[피고인 A]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

1.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

1.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

1. 수사보고서(피의자 H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-대마양성, 피의자 B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-양성)

[피고인 B]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



1.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

1.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

1. 각 감정의퇴회보서 및 감정서

1. 수사보고서(피의자 H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-대마양성, 피의자 B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-양성, M과 B이 연락했던 자료 수집 관련, N의 판결문 확인, CCTV 영상 확인, 펜타닐 패치 및 흡입 도구에 대한 마약 감정서 관련)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가. 피고인 A: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, 제3조 제10호 가목(대마흡연의 점),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, 제4조 제1항 제2호(대마 수수 및 교부의 점), 각 징역형 선택

나. 피고인 B: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, 제3조 제10호 가목(대마 흡연의 점),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, 제4조 제1항 제2호(대마 수수의 점),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, 제3조 제1호, 제2조 제2호 마목(펜타닐 투약의 점), 각 징역형 선택

1. 경합범가중

피고인들: 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1. 집행유예

피고인들: 형법 제62조 제1항(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)

1.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

피고인들: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, 제3항, 제4항



1. 주장

피고인들: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(각 수사보고(추징금 산정))

1. 가납명령

피고인들: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양형의 이유

[피고인 A]

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고, 이를 흡연하며, 그 중 남은 대마를 자신의 아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으로, 마약류 범죄가 투약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.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도 하다. 한편,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, 자신의 아들에게 대마를 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,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의 경위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,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[피고인 B]

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수수,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, 마약에 해당하는 펜타닐까지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가 투약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비추어,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. 대마 투약 횟수 또한 적다고 볼 수 없다.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. 한편,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,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판단 능력이 미숙하였으며, 성인들이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한 경향이 있는 점,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의 경위,

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2-24

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는 등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판사 허정인 _____